

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8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자문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폐지 및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·임기에 대한 개정
- 시를 대표한 대회 출전 및 홍보 부스 등 홍보운영 지원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자문위원회 운영 정비

- 1)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당연직 임명사항(부시장→해당 본부장) 및 위원 임명 기간 변경 (안 제5조)
- 2) 운영자문위원회 존속기한 조항 삭제 (안 제8조)

나. 해양레저산업 홍보 지원 확대

요트 대회 출전 및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 운영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12조)

다. 준용 조례 정비

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준용 조례 추가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
바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6. 1. 14. ~ 2026. 2. 3. 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해양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안산시의원

2.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·전문기관·협회·시민단체 등의 관계자

3.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교육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시를 대표한 대회 출전 및 홍보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대부해양본부
입	해양수산과	문 황 립
안	해양레저팀장	윤 정 환
자	담 당 자 (연락처)	박 유 립 (481-2330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</u> <u>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</u> <u>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,</u> <u>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</u> <u>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</u> <u>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</u> <u>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</u> <u>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당연</u> <u>직 위원은 해양업무 담당 실·</u> <u>국·본부장이 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u> <u>하며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</u> <u>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<u>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해</u> <u>양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,</u> <u>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</u> <u>(互選)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</u> 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</u> <u>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</u> <u>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</u> <u>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8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</u> <u>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</u> <u>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해양아카데미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해양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5조(준용) <u>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	<p>제12조(해양아카데미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시를 대표한 대회 출전 및 홍보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준용) <u>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